## 「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위

O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4. 11(월) 평창군수(산림과장)

O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
O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산림과장 김철환)

○ "평창산양삼특구" 지정 후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○ 본 조례안은 2014. 9. 25일자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외 42필지 4,282,476㎡가 「평창산양삼특구」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
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8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.

- O 주요 내용을 보면
  - 안 제3조에서는 대외적 명칭표시
  - 안 제4조에서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광고물의 특례
  - 안 제5조에서는 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, 재원, 경비 보조 등에 대하여 규정
  - 안 제6조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한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 설치
  - 안 제7조에서는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.
- O 검토 결과

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기반 조성 및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연차별 특화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,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
  - 연차별 특화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확보 및 평창산양삼 제품이 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.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##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산양삼특구"란 중소기업청장이 「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제4조에서 "법"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.
- 제3조(대외적 명칭표시) 평창군 산양삼특구(이하 "특구"라 한다)의 대외적 명칭은 "평창산양삼특구"로 표시한다.
- 제4조(광고물의 특례)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특구지역에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특례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·모양·크기·색깔·표시 또는 설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5조(특화사업의 운영) 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- 1.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,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
- 2. 산양삼 가공·유통 시설, 지리적 표시, 공동브랜드 개발,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
- 3. 산양삼 홍보 및 판매, 힐링투어 운영, 교육, 축제,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
- 4.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
-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·강원도비·군비 및 민자부담금으로 한다.
- ③ 군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,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1. 관련법인
- 2.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ㆍ협회
- 3. 산양삼 재배농가
- 4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
-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6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·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

- 2. 홍보 및 발전 방향 제시
- 3. 제4조에 따른 광고물의 설치
- 4.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· 반영 및 조정
-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· 자문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- ④ 위촉직 위원은 부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, 산림과장으로 한다.
- 1. 지역주민 대표(이장,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)
- 2. 학계,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는 사람
- 3.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- 4. (사)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
- 5. 평창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6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산양삼특구담당 주사가 된다.
- 제7조(위원회의 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

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.
-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